

#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128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03. 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□ 개정이유

- 테크노파크의 위상강화를 통한 경기 중·남부권역의 핵심기술 거점역할 수행등을 위하여 테크노파크의 명칭이 “경기테크노파크”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코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조례의 제명 “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”를 “안산시「경기테크노파크」설립및운영지원조례”로 함.
- 나. 테크노파크의 사업에 “경기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산·학·연·관 연계사업”을 추가함.(안 제4조)
- 다.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,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)

## 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4조
- 산업기술단지조성운영요령 제30조

## 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□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안산테크노파크 광역화 건의문
- 안산테크노파크 광역화 건의에 대한 회신문
- 현행조례(전문)

##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의 제명중 “안산테크노파크”를 “안산시「경기테크노파크」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”를 “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4조”로 하고, “안산테크노파크”를 “경기테크노파크”로 한다.

제4조중 “제4조제8호 및 제9호”를 “동조 제9호 및 제10호”로 하고,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8. 경기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산·학·연·관 연계사업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 (보고 및 검사 등) ①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실·과      |                | 첨단산업과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임<br>안<br>자 | 실·과장<br>직위·성명  | 첨단산업과장<br>한 성 기   |
|             | 담당·팀장<br>직위·성명 | 첨단산업팀장<br>박 석 운   |
|             | 담당자<br>성명·전화   | 이 성희<br>(행정 2102) |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| 개<br>정<br>안  |
|---|--|
| <b>안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</b>  | <b>안산시 「경기테크노파크」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</b>   |
| 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<u>공업 및 에너지 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</u>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 기술 고도화 및 기술 기반 조성을 위한 <u>안산 테크노파크</u> (이하 “테크노파크”라 한다)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 (목적) .....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.....<br>.....<br><u>경기테크노파크</u> .....<br>.....<br>.....   |
| 제4조 (사업)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br>1. ~ 7. (생략)<br><u>〈신설〉</u><br>8. (생략)<br>9. (생략)   | 제4조 (사업) .....<br>.....<br>1. ~ 7. (현행과 같음)<br><u>8. 경기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산·학·연·관 연계사업</u><br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br>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  |
| 제8조 (보고 등)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리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  | 제8조 (보고 및 검사 등) ①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관리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br>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|